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01.18)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9162)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며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40	0.85	1.59	1.40	140	287	441	774	1,76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95	0.40	-	0.95	97	200	307	538	1,225

(주)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율을 의미합니다.

(주4)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이미하며 학설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p>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 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p>환매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오후 3시 30분(15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공시장소</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과세	<p>1. 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td></tr> <tr> <td>수령요건</td><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 <td>연금계좌 세액공제</td><td> <p>[납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p>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p> </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p>[납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p>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p>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p>[납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p>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p>									

	<p>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p>연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p> <p>연 1,500만원 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p>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나이별로 5.5~3.3% 원천징수하고, 1,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2013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가입자
----	-------------------------	-----------------------------------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령 80조의24항 적용)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 ^{주1)}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특별중도해지)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주2)})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특별중도해지)	-	천재지변 /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원천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주2)})	
주1)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으로 인한 해지를 할 경우 종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적용한다. (나이별로 5.5% ~ 3.3% 적용하지 아니함)			
※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② '①'의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따라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 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환매합니다.		
	④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따라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하고자 하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합니다.		
	⑤ '③' 및 '④'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p>⑥'③' 및 '④'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오후5시]까지로 합니다.</p> <p>⑦'④'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p>		
집합투자 업자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좌
효력발생 일	2025년 4월 11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택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